

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안내

의사소통 도움 그림판 사용 매뉴얼을 포함한 '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'(20.6) 관련 장애계 요청사항* 중 기 조치한 사항 및 진행상황을 공유

* 매뉴얼 개정을 위한 장애계 의견조회 실시(10.23~11.6)

[1] 기간 조치사항 (20.6월이후)

1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 현장 활용도 제고

- (매뉴얼 추가 배포) 의료지원부서, 선별진료소 등 660개소 배포*
 - 특히, 임시선별검사소, 임시선별진료소 등 신규로 추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배포 가능토록 수량 고려하여 배포

* ('20.6) 1천부 + ('20.12) 5천부 (총 6천부)

- (매뉴얼 현장 활용 요청) 지자체 활용 요청(지자체 공무원 간담회, 시도 부지사 회의 등/5회) 및 현황 점검 실시('20.11)*

* 지자체 점검결과, 매뉴얼 미구비 지역(34개)에 즉시 비치 등 협조 재요청

- 매뉴얼 이행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'코로나대응지침(9-4판)'에 장애인 고려사항* 등 반영('20.12)

* 장애인 자가격리시 '장애인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' 준수토록 명기, 발달 장애인 등 장애인의 경우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시 보호자 동반 가능 명기

2 진단검사시 의사소통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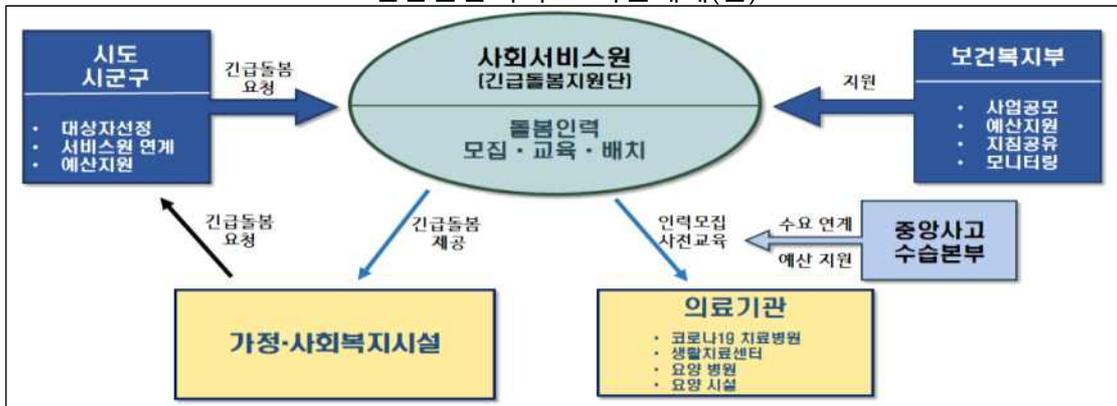
- (의사소통 도움 그림판 추가 배포) 발달·청각·시각장애인 등 대상 의사소통 도움 그림·그림판(AAC) 별도 추가 제작·배포('20.12 / 8천부)
- (수화통역 지원) 손말이음센터 및 전국 수화통역센터 안내문 배포, 영상 전화기 구비·활용 요청('20.12)

- (역학조사)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장애유무 및 정도 등을 파악하여 대응토록 역학조사 양식 수정·반영('20.11)

3 지역사회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

- (활동지원) 도전적 행동을 동반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:1 서비스 시범 운영 후 본격 도입('21.1~)
 - (중증 장애인 서비스 제공유인 강화) 최중증 장애인 서비스 제공시 지급하는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 확대 및 단가 현실화*('21.1)
 - * ('20) 대상 2천명 / 단가 1,000원→('21) 대상 3천명 / 단가 1,500원 (대상 및 단가 50%씩 증)
- (긴급돌봄) 11개 시·도 사회서비스원* 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돌봄 대상자(장애인 포함)·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 지원
 - * (설립·운영 지역) 서울, 대구, 대전, 인천, 광주, 세종, 경기, 경남, 충남, 강원, 전남
 - * (미설치 지역) 부산, 울산, 충북, 경북, 전북, 제주
 - (시설·가정) 가족·종사자 확진, 돌봄 제공자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가정·시설에 돌봄인력 지원
 - * (서울 사회서비스원) 코호트격리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시 동반입소까지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 중 ('21.1.5~)
 - (의료기관 등) 고령확진자 등의 신체수발을 위한 돌봄인력*을 모집(인력풀 마련)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중수분에 연계, 지자체는 필요시 중수분에 돌봄인력 지원 요청, 중수분은 인력 매칭
 - * 식사, 목욕,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 돌봄

<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(안) >



4 장애정도 및 특성 고려 대책 강화

- (마스크)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조치('20.11)
- (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지원) 감염 위험 이유로 혈액투석 필요 자가격리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(격리실 입원료 및 본인부담금 지원) 실시('20.10)
 - 인공신장실·이동형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* 확보하여, 확진자 적기 치료 가능 환경 구축
 - * '20.12.24. 4개 병원(17병상) 확보하여 운영 개시, 최대 38병상까지 순차 확대
- (보호자 동반) 감염병 예방등을 위해 검체 채취, 격리시 1인 독립(분리) 원칙이나, 보호자 동반 가능 토록 조치 ('코로나 대응 지침 9-4판' 반영)
 - (선별진료소)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 가능토록 조치(보호자 안전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필요사항 조치)
 - (자가격리) 장애인의 경우, 보호자와 공동 격리 가능토록 조치
 - (병실 등 배정)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, 기저질환 치료여건 등을 고려한 병실 배정토록 조치
- (전담 조직) 중수본內 혈액투석신장장애인 지원등을 위해 '특수 병상팀' 신설하여, 의료지원 방안 등 논의·마련

5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

- (전담 병원)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('20.12.24)*, 의료 인력 및 돌봄인력** 지원('21.1.4~), 운영 개시('21.1.6~)
 - * (전담병상) 10병상 개시, 23병상까지 순차 확대
 - ** (의료진) 의사(3명) 및 방사선사(1명) 배치('21.1.4일 先 배치하여 안전교육 完) (돌봄인력) 병상생활(식사도움, 배변 등) 지원 위해 간병인, 영양보호사 등 배치 요청(1.7일 현재, 영양보호사등 3명 배치 되었으며 41명까지 순차 확대)

- (활동지원)장애인 확진자 돌봄 위해 지원 기준 완화('20.12)^{<붙임1>}
 - 자가격리자(24시간 서비스 제공)→ 확진자 및 활동지원 비수급자의 병상 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
 - * (수급자) 퇴원시까지 일24시간 지원
 - (비수급자) 일12시간 총10일 지원(120시간)

6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예방 및 확산방지

- (선제 검사) 종사자 대상 PCR(취합검사법) 1주 간격으로 진단검사('20.1.4~)

[2] 현재 추진중인 사항

- (매뉴얼 개정판 마련) '예방-진단-격리·입원-치료'에 걸친 단계별 대응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매뉴얼 개편(~'21.2)
- (통계) 장애인 확진자, 격리자 지원 대책 보완등을 위해 방대본과 통계 생산 정례화 협의 중
 - 확진자 정보는 민감정보로써, 필요정보가 방대본내 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단일 통계생산 어렵다는 입장이나, 지속 협의통해 확보 예정
- (생활치료센터) 현재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에 편의시설이 갖춰진 현황등을 파악중으로, 완료 후 해당 센터 우선 배정 공문 시행 예정('20.12~)

붙임1 장애인 확진자 긴급활동지원 개요

□ 지원배경

-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수급자가 확진되는 경우 돌봄인력 부족
 - 이에 따라 수급자가 확진되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일상생활(식사 배변 등)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

□ 지원대상 및 방법

- (수급자)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준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
 - 퇴원 시까지 일 24시간 지원
 - 수급자의 급여액을 입원 기간 중 일할하여 차감하고 잔액 지원
 - 급여 청구 및 지급은 '자가격리자 24시간 활동지원급여' 제공방법과 동일
- (비수급자) 활동지원 비수급자인 중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
 - 일 12시간 총 10일 지원(120시간)
 - 입원 기간이 10일을 경과하는 경우 10일 단위로 소관 지자체에서 재지원 여부 판단
 - 급여 청구 및 지급은 '긴급활동지원급여' 제공방법과 동일
- (가족돌봄) 장애인 특성상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, 해당 가족은 소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

① 장애인 지원 체계

-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·배포 및 추가 배포(총 6천부)
- 선별진료소-자가격리-입원 등 단계별로 방대본 지침에 장애인 특성 고려 필요사항 등 반영(발달장애인등 검체 채취시 보호자 동반 가능 등)
- 역학조사단계부터 장애유무 및 정도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양식 수정·반영
- 중수본내 특수병상팀을 신설하여 신장장애인 등 의료지원 방안 논의, 마련

②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

-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방역관리지침 등 전파(장애인시설, 총 21회)
- 장애인 거주시설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이송지원 및 추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, 격리시설 마련 * (예) 경북 예천 극락마을: 임시 격리공간으로 6개 경로당 분산 격리
-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, 손소독제 보급(56백만원/ 3,877명)
-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장애인 대리구매 확대
-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을 위해 공적 마스크(26만장) 배분
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PCR검사

③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

- 코로나 관련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
- 청각장애인의 상담 편의 강화를 위해 1339 카카오톡 상담 강화 및 영상 수화 상담(129 콜센터, 손말이음센터 연계) 개시
- 시각장애인을 위해 코로나 19 관련 인쇄물 배포 시 음성변환출력 QR코드 포함
-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선별진료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(청각·발달장애인 등)을 위한 ‘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’ 지자체, 선별진료소 배포(8천부)
- 청각장애인, 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위한 손말이음센터 및 전국 수어통역 센터 연락처 등 배부, 영상전화기 구비·활용 요청

④ 장애인 의료 지원

-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, 기저질환 치료여건 등을 고려한 병실 배정
- 자가격리 신장장애인의 격리투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실시(격리실 입원료 및 본인부담금 지원)

-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원 지정·운영, 의료 및 돌봄인력(요양보호사 등)
-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·발달장애인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조치

⑤ 자가격리, 학교·시설 휴교·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

- (긴급 활동지원)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자가격리, 복지관 휴관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**긴급활동 급여 제공**(월 120시간, 2월~)
- (24시간 활동지원)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**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**, 돌봄 제공자 범위를 한시 확대하여 **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 제공**(2월~)
- (보호자 부재 시 지원) ‘**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**’(월 20시간) 추가 제공(2월~)
- (방학 중 특별급여) 중·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여름방학 중 **활동지원 추가 지원**(20시간, 8월)
- (이용시설 긴급돌봄) (2월) 이용시설 휴관 시 긴급돌봄 유지 요청 → (7월) 단계적 운영재개 가이드라인 배포 및 휴관 시 긴급돌봄 의무화 → (11월) 거리두기 5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
- (발달장애인 주간활동)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조치 및 비용청구조건 완화로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지원(3월), **1:1 서비스 시범 운영**(11~12월)
- (제공인력 자격요건 완화)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보호자 또는 장애인 동의 시 기본적 안전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허용
- (활동지원 대상 완화) 병원, 생활치료센터에 입원(입소)한 확진자, 활동지원 비수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**활동지원 제공토로 완화**
- (공공돌봄) 돌봄중단 위기 가구 방문, 코호트격리 사회복지시설 내 대체인력 지원, 확진자 돌봄 위해 동반 입소 등